

#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2023. 06. 27.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수수료의 부과 원칙)

1.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은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수수료 부과 시 상품의 성격,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나. 성과보수: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다. 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라. 신탁업자 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마.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 또는 중도 환매를 하는 경우에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판매수수료: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 수수료와 후취판매 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은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보수에 적용된다.

1.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수행과 관련된 운용보수
2. 상기 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 **제5조(수수료 부과 기준)**

-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

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유사전략, 동일구조의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 부과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상품개발에 투입된 시간, 인력 및 비용

2.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3. 시장에 출시된 경쟁상품 대비 상품의 독창성 및 희소성

4. 상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운용의 전문성

5. 상품 출시 이후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 인력 및 비용

6. 해당 상품에 대해 집합투자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

7. 사모 집합투자기구 수익자의 투자규모 및 투자예상 기간

#### **제6조(수수료 부과 절차)**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는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운용상의 중요 변경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수수료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내부 상품개발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상품개발위원회(위원장: 마케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참석자: 운용, 운용지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마케팅 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상품의 특성 및 업무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 마케팅업무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며 상품과 관련된 유가증권신고서/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⑤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수료 이외

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제7조(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지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공시)**

이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

이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범위의 변경, 내부 업무 절차 또는 조직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의 일반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일인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